여 비 규 정

목 차

| ス | 1장 총칙 ······ | -1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제1조 목적 | -1 |
| | 제2조 여비의 종류 | -1 |
| | 제3조 여비의 계산 | -1 |
| | 제4조 일비, 식비, 숙박료 등의 지급 | -1 |
| | 제5조 실비지급 | -2 |
| | 제6조 여비의 변경 | -2 |
| | 제7조 여비지급 및 정산 | -2 |
| | 제8조 지급제한 | -2 |
| | 제9조 여비지급의 특례 | -3 |
| ス | 2장 국내여비 | -3 |
| | 제10조 국내여비 지급기준 | -3 |
| | 제11조 근무지내 출장여비 | -3 |
| | 제12조 부임여비 | -4 |
| | 제13조 가족여비 | -4 |
| | 제14조 가재이전비 지급대상 | -5 |
| | 제14조의2 가재이전비의 지급 | -5 |
| | 제15조 가족여비 및 가재이전비 청구 | -5 |
| | 제16조 파견 및 현장체재자의 여비 | -5 |
| ス | 3장 국외여비 | -6 |
| | 제17조 국외여비 지급기준 | -6 |
| | 제18조 여비의 감액지급 | -6 |
| | 제19조 준비금 | -7 |

| 부 최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6조 | : 가산징수 등8 |
| 제25조 | : 기타사항8 |
| 제24조 | : 임직원이외의 여비 |
| 제5장 보 | L칙 |
| 제23조 | : 출장 중 사망자 |
| 제22조 | : 휴직 또는 퇴직자의 여비 |
| 제21조 | : 출장 중 휴직 또는 퇴직자의 여비 |
| 제4장 토 | 직자·휴직자·사망자의 여비 ······ |
| 제20조 | : 특수임무의 부여 |

여비규정

1981. 8. 7 승인(규정 제 4호) 1981.11.28 개정(규정 제 13호) 1983. 7.26 개정(규정 제 64호) 1985. 4.22 개정(규정 제 96호) 1988. 2.24 개정(규정 제153호) 1989.11.14 개정(규정 제212호) 1993. 1.27 개정(규정 제287호) 1994. 7. 1 개정(규정 제364호) 1996.10.21개정(규정 제423호) 2001. 8.23 개정(규정 제576호) 2002. 9.11 제규정관리규정 개정(규정 제613호) 2002.10. 1 개정(규정 제614호) 2006. 6.26 개정(규정 제768호) 2007. 8. 7 개정(규정 제800호) 2009. 2.20 개정(규정 제853호) 2009. 7.29 개정(규정 제863호) 2010. 5.10 개정(규정 제899호)

2011. 2. 1 개정(규정 제916호) 2011. 4.27 개정(규정 제923호) 2011. 11.1 개정(규정 제936호) 2012. 7. 6 개정(규정 제964호) 2013. 3.25 개정(규정 제989호) 2013. 8.19 개정(규정 제1003호) 2014. 5.20 개정(규정 제1021호) 2015. 2.11개정(규정 제1056호) 2015. 9. 1개정(규정 제1070호) 2017. 3.24개정(규정 제1130호) 2017.10.18.개정(규정 제1146호) 2017.12.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(규정제1160호) 2018.10.30. 개정(규정제1199호) 2019.1.3. 개정(규정제1208호) 2019.7.2. 개정(규정제1235호) 2021.1.6. 개정(규정제1314호) 2023.6.15. 개정(규정제1430호) 2024.8.14. 개정(규정제1478호) 2025.2.20. 개정(규정제1501호)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하 거나 인사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88.2.24., 1996.10.21., 2017.12.4.. 2021.1.6.>
- 제2조(여비의 종류) 여비란 항공운임, 철도운임, 선박운임, 자동차운임, 일비, 숙박료, 식비, 근무지내 출장여비, 가족여비 및 가재이전비로 한다. <개정 1989.11.14, 1993.12.7, 2006.6.26, 2010.5.10., 2015.9.1. 2021.1.6.>
- 제3조(여비의 계산)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. 다만, 업무형편상, 천재지변,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른 계산이 부적합한 때에는 실제 소요되는 일수 및 여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0.21, 2001.8.23, 2010.5.10. 2021.1.6.>
- 제4조(일비, 식비, 숙박료 등의 지급) ① 일비 및 식비는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, 숙박료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선박과 항공기내에서 숙박하는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되,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. <개정 2021.1.6.>
 - ②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

-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.6.>
- ③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수로출장과 항공출장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하며, 소속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유가 충분한 경우 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.6.>
- 제5조(실비지급) 이사장은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3.1.27, 2010.5.10>
- 제6조(여비의 변경) ① 출장(파견 및 현장체재를 포함한다)도중 여비에 관한 규정이나 직급 등의 변경으로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달한 날로부터 구분하여 계산한다. <개정 1996.10.21>
 - 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수로써 지급한다.
- **제7조(여비지급 및 정산)** ① 여비는 실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정범위내에서 계산하여 선급 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0.21, 2015.2.11., 2015.9.1.>
 - ② 국내 및 국외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「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지침」에 따른 법인카드 또는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출장지에서 법인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9.1. 2021.1.6>
 - ③ 국내 및 국외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,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하며,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비를 선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산급여비 정산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.6.>
 - ④ 제3항에 따라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.6.>
 - ⑤ 제2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,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1.1.6.>
- 제8조(지급제한) ①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, "공단"이라 한다)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구간에 대한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하며, 일비는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이동검사차량을 이용하여 숙박을 동반하는 출장을 하는 경우 일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89.11.14, 1996.10.21., 2007.8.7. 2018.10.30. 2021.1.6. 2021.1.6.>
 - ② 삭제 <2006.6.26.>
 - ③ 회의, 강의참석 관련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단 이외의 다른 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여비규정의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. <신설 2009.7.29.>

- ④ 제17조제4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. <신설 2012.7.6.. 2021.1.6.>
- ⑤ 업무수행을 위한 식비의 접대성 경비 지출 시에는 그 해당 식비의 지급을 제한한다.
-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2.11.. 2021.1.6.>
- ⑥ 부득이하게 소속장이 승인하는 전(前)일 출장 시에는 근태관리시스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운임 및 숙박비를 지급 한다. 다만, 전(前)일에 해당하는 일비와 식비는 지급하지아니한다. <신설 2021.1.6.>
- 제9조(여비지급의 특례) ① 2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소속장이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운임,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숙박료 및 식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4.7.1, 1996.10.21, 2006.6.26, 2010.5.10., 2015.9.1., 2018.10.30. 2021.1.6.>
 - ②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있다. <신설 2018.10.30.>

제2장 국내여비

- **제10조(국내여비 지급기준)** ① 임직원이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국내여비를 지급한다. <개정 1996.10.21, 2010.5.10. 2021.1.6.>
 - ② 삭제 <2007.8.7>
 - ③ 동일목적으로 연속 14일 이상 출장할 경우에는 14일 초과일에 대하여 근무지내 출장은 여비의 2분의 1을, 근무지외 출장은 일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되, 업무용 차량이용 시 중복하여 감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6.6.26, 개정 2011.2.1., 2018.10.30.>
 - ④ 삭제 <2015.9.1>
 - ⑤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2.10.1, 2006.6.26>
 - ⑥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(滯在)하는 임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. <개정 2014.5.20. 2021.1.6.>
- 제11조(근무지내 출장여비) ① '근무지내 출장'이란 같은 시(특별시, 광역시는 포함한다.)

- · 군 및 섬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)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 다만, 목적지인 섬이 같은 시·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·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,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외 출장으로 한다. <신설 1993.1.27>, <개정 1996.10.21, 2006.6.26, 2010.5.10, 2015.2.11., 2015.9.1. 2021.1.6.> ②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 원을,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 원을 지급한다. 다만.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 <신설 2006.6.26>, <개정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여행거리가 4km 미만의 출장은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9.1>
- ④ 제2항의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월정액을 부서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한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한다. <개정 2006.6.26, 2015.9.1>
- 제12조(부임여비) ① 사옥 소재지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임지에서 부임지까지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부임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부임지가 동일시(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)·군 내인 경우나 서울, 인천, 경기지역(수도권지역), 광역시의 위성도시지역 등 도시철도 및 전철이용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3.1.27, 1996.10.21, 2006.6.26, 2009.2.20., 2012.7.6. 2021.1.6.>
 - ② 삭제 <2006.6.26.>

2009.2.20, 2010.5.10, 2015.9.1. 2021.1.6.>

- ③ 외국으로 부임하는 직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부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국외여비지급기준에 따라 부임여비를 지급하고, 비자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7조제3항에 따르며, 부임일로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 부임여비 신청서에 따라 청구한다. <개정 2017.10.18. 2021.1.6.>
- 제13조(가족여비) 사옥 소재지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을 받고 부임지에 1년 이내에 가족 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이전시킨 임직원에게는 가족 1명마다다음 기준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한다. <개정 1996.10.21, 2009.2.20, 201.5.10, 2012.7.6. 2021.1.6.>
 - 1. 교통운임과 숙박비 : 본인이 출장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
 - 2. 일비와 식비 : 본인이 출장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,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
 - 3. 삭제 <2012.7.6.>
 - 4.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취업하여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되, 정신적·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이

사장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부임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. <신설 2017.10.18. 2021.1.6.>

- 제14조(가재이전비 지급대상) 가재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전임지(제2호의 경우에는 구사옥 소재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신임지(제2호의 경우에는 신사옥 소재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사람에게 지급한다.
 - 1. 인사발령을 받은 임직원
 - 2. 사옥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임직원 및 정원외의 직원
 - 3. 외국으로 부임하는 직원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부임하는 직원 <신설 2017.10.18>
- 제14조의2(가재이전비의 지급) ①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사옥의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 별표 3의 인사발령에 따른 가 재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15.2.11. 2021.1.6.>
 - ② 삭제 <2015.2.11>
 - ③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사옥의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가재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2.7.6>, <개정 2015.2.11>
 - ④ 삭제 <개정 2021.1.6.>
- 제15조(가족여비 및 가재이전비 청구) ① 가족여비 및 가재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부임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이사화물의 운송명세(이동구간·운송비)와 기타 가족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 2호서식의 가족여비 및 가재이전비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상 가재이전비의 청구는 해상화물운송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1.27, 1996.10.21, 2001.8.23, 2009.2.20, 2010.5.10, 2011.11.1, 2012.7.6. 2021.1.6.>
 - ② 사옥 소재지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이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부임지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부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 및 가재를 이전하는 때에 가족 여비 및 가재이전비는 구임지로부터 부임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 <개정 2010.5.10. 2012.7.6>
- 제16조(파견 및 현장체재자의 여비) ① 공단의 업무수행과 공사현장 감독 등으로 현장근무를 하거나 근무지외의 지역에 파견명령을 받고 동일지역에 장기체재하는 직원에게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부임 및 귀임운임과 숙박료를 월단위로 지급하고, 주1회 거주지에서 체재지까지의 왕복운임을 별도로 지급한다. 다만, 기숙사(사택 포함)를 이

용하는 경우에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거주지에서 체재지까지의 거리가 편도 50km 미만인 경우와 거주지를 체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여비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. <개정 1996.10.21, 2001.8.23, 2006.6.26, 2007.8.7., 2009.7.29.. 2021.1.6., 2024.8.14.>

-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동일지역에 30일을 초과하여 체재할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숙박료는 월정액 500,000원을 기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 <개정 1993.1.27, 1996. 10.21, 2007.8.7>
- ③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출장시에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 준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6.10.21, 2001. 8.23. 2021.1.6.>

제3장 국외여비

- 제17조(국외여비 지급기준) ①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공무형편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환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0.21, 2009.2.20, 2010.5.10. 2021.1.6.>
 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 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지체 없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2.20>
 - ③ 국외 출장시 비자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지급하고, 통역비, 렌트카 이용료 등은 해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·인정하는 경우 본부장 이상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 및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11.2.1., 2015.9.1., 2019.1.3. 2021.1.6.>
 - ④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(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,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7.6>
 - ⑤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항공운임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항공권 발매자 (항공사, 여행사 등)에 직접 송금하여야 하며, 국외출장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3.25. 2021.1.6.>
- 제18조(여비의 감액지급) ① 공단 이외의 타기관(초청국 포함)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여행(파견, 연수교육 포함)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액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3.1.27>
 - ②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료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감액기준에 따라 순서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. <개정

1993. 1.27, 2007.8.7, 2010.5.10>

- 1.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% 감액
- 2.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50% 감액
- 3. 9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70% 감액

제19조(준비금) 삭제 <2015.9.1>

제20조(특수임무의 부여) 국외출장하는 임직원에게는 기본 출장목적이외의 해당 출장지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필요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0.21, 2010.5.10>

제4장 퇴직자・휴직자・사망자의 여비

- 제21조(출장중 휴직 또는 퇴직자의 여비) ① 출장(파견 및 현장체재를 포함한다)중에 휴 직 또는 퇴직한 사람에게 기지급한 여비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산급여비 정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당시 직급에 해당하는 귀 임운임은 지급한다. <개정 1996. 10.21, 2010.5.10. 2021.1.6.>
 - ②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임직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. <신설 2021.1.6.>
 - ③ 제2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준한 가재이전비를 지급하고,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. <신설 2021.1.6.>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임직원 또는「인사규정」제58조제2항에 휴직한 임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0.1.6.>
- 제22조(휴직 또는 퇴직자의 여비)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자에게 출장을 명하거나 의뢰하였을 때에는 당시 직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.
- 제23조(출장중 사망자) ① 국내출장(파견, 현장체재 및 부임을 포함한다)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출장지(부임지)로부터 근무지(구임지)까지의 사망 당시 직급에 해당하는 여비(숙박료 제외)의 2배액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0.21., 2025.2.20.>
 - ② 국외 출장 또는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출장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. <신설 2025.2.20.>

제5장 보칙

- 제24조(임직원이외의 여비) 고문, 촉탁, 위원 또는 외부인사로서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출 장할 때에는 그 대우에 상당하는 직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6.10.21.>
- 제25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필요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26조(가산징수 등) ① 이사장은 임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 <신설 2021.1.6. 2023.06.15.>
 -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1.1.6.>

부 칙 <규정 제4호, 1981.08.07.>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81. 8. 7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3호, 1981.11.28.>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82. 2. 13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64호, 1983.07.26.>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83. 7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6호, 1985.04.22.>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85. 5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53호, 1988.02.24.>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88. 2. 24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212호, 1989.11.14.>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89. 11. 14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287호, 1993.01.27.>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93. 1. 27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364호, 1994.07.01.>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94. 7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423호, 1996.10.21.>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576호, 2001.08.23.>

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규정관리규정) <규정 제613호, 2002.09.1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. 9. 16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요령) (생략)

제3조(명칭변경)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제정 시행중인 제규정의 명칭중 규칙은 규정으로, 요령은 세칙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②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제규정의 명칭을 변경한다.

- 1. "강사료등제수당지급규칙"을 "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"으로
- 2. "보안업무규칙"을 "보안업무운영세칙"으로 한다.

부 칙 <규정 제614호, 2002.10.01.>

이 규정은 2002. 10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768호, 2006.06.26.>

이 규정은 2006. 7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800호, 2007.08.07.>

이 규정은 2007. 8. 7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853호, 2009.02.20.>

이 규정은 2009. 2. 2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863호, 2009.07.29.>

이 규정은 2009. 7. 29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899호, 2010.05.10.>

이 규정은 2010. 5. 1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16호, 2011.02.01.>

이 규정은 2011. 2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23호, 2011.04.27.>

이 규정은 2011. 5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36호, 2011.11.01.>

이 규정은 2011. 11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64호, 2012.07.06.>

이 규정은 2012. 7. 6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89호, 2013.03.25.>

이 규정은 2013. 3. 25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003호, 2013.08.19.>

이 규정은 2014. 1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021호, 2014.05.20.>

이 규정은 2014. 5. 2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056호, 2015.02.11.>

이 규정은 2015. 2. 11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<규정 제1070호, 2015.09.01.>

이 규정은 2015. 9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130호, 2017.03.24.>

이 규정은 2017. 1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146호, 2017.10.18.>

이 규정은 2017.10.18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규정관리규정) <규정 제1160호, 2017.12.0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법률 제14939호(2017.10.24.)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"교통안전공단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"으로 하고, "교통안전공단법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법"으로 한다.

부 **칙** <규정 제1199호, 2018.10.30.>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208호, 2019.01.03.>

이 규정은 2019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235호, 2019.07.02.>

이 규정은 201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314호, 2021.01.06.>

이 규정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<규정 제1430호, 2023.06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근태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 <규정 제1478호, 2024.08.14.>

이 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501호, 2025.02.20.>

이 규정은 202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여비규정 [별표1] <개정 2006.6.26, 2011.2.1, 2012.7.6, 2013.8.19., 2015.9.1., 2017.10.18., 2021.1.6., 2023.06.15.>

국내여비 지급기준 (제10조 제1항 관련)

(단위: 원)

| 구 분 | 철도운임 | 선박운임 | 항공운임 | 자동차 운 임 | 일 비 (1일당) | 숙박료 (1야당) | 식 비 (1일당)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이사장 | 실비 | 실비 | 실비 (Dangian a na | kl ul | 25,000 | גן חן | 25 000 |
| 감사,이사 | (특실) | (1등급) | (Business Class) | 실비 | 25,000 | 실비 | 25,000 |
| 1급, 2급 | 실비 | 실비 | 실비 | | | 실비 상한액 • 서울특별시 : 100,000 | |
| 3급이하 | (일반실) | (2등급) | (Economy Class) | 실비 | 25,000 | · 광 역 시: 80,000 · 그 밖의 지역 : 70,000 | 25,000 |

- 1. 일비는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,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이다.
- 2.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- 3.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[별표1]에 따른 철도 운임 또는 버스운임 으로 한다. 다만,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사유가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정 한다.
- 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.
- 5. 숙박비는 발생하였으나, 숙박비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

■ 여비규정 [별표2] 삭제 <2006.6.26.>

■ 여비규정 [별표3] <개정 2006.6.26, 2012.7.1, 2015.2.11., 2017.3.24., 2017.10.18>

인사발령에 따른 가재이전비 지급기준 (제14조2 관련)

| 구분 | 지급기준 | 지급액 |
|-----|--|---|
| | 5톤 이하의 화물 |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(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) |
| 국 내 |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(이사화물이 7.5톤은 넘는 경우에는 7.5톤을 상한으로 한다) |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(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)에 5톤 초과 7.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(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)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|
| |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| 실비 |
| 국 외 | 15세제곱미터 초과의 이사화물(이 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 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) |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 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 트를 더한 금액 |

[※]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, 인건비등을 포함하되, 각종 옵션 사항(에어컨설치 등)으로 분류 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.

■ 여비규정 [별표3-1] 삭제 <2015.2.11.>

■ 여비규정 [별표4] <개정 2011.4.28, 2011.11.1., 2015.9.1., 2017.10.18., 2019.7.2. 2021.1.6. 2023.06.15.>

국외여비 지급기준 (제17조 관련)

(단위 : \$)

| 직 급 | 항공운임 | 등 급 | 일 비 | 숙박료 | 식 비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
| | | 가 | 50 | 실비(상한액:389) | 160 |
| ما يا عا | | 나 | 50 | 실비(상한액:289) | 117 |
| 이 사 장 | (Business Class) | 다 | 50 | 실비(상한액:215) | 87 |
| | | 라 | 50 | 실비(상한액:161) | 73 |
| | | 가 | 40 | 실비(상한액:282) | 133 |
| 7L 1 | · 중간정액 | 나 | 40 | 실비(상한액:207) | 99 |
| 감사 | (Business Class) | 다 | 40 | 실비(상한액:162) | 72 |
| | | 라 | 40 | 실비(상한액:108) | 61 |
| | 중간정액 (Business Class) | 가 | 35 | 실비(상한액:223) | 107 |
| ما دا | | 나 | 35 | 실비(상한액:160) | 78 |
| 이사 | | 다 | 35 | 실비(상한액:130) | 58 |
| | | 라 | 35 | 실비(상한액:85) | 49 |
| | | 가 | 30 | 실비(상한액:176) | 81 |
| رة الا | 2등 정액 | 나 | 30 | 실비(상한액:137) | 59 |
| 직원 | (Economy Class) | 다 | 30 | 실비(상한액:106) | 44 |
| | | 라 | 30 | 실비(상한액:81) | 37 |
| | | | | | |
| 삭제 | | | | | |
| (국 제 | | | | | |
| | | | | | |

-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가등급: 도쿄, 뉴욕, 런던, 로스엔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 D.C., 파리, 홍콩, 제네바, 싱가포르

나. 나등급

- 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베이징, 사모아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, 일본, 카자흐스탄, 쿡제도, 타이완, 파푸아뉴기니
- 2) 남·북아메리카주: 멕시코, 미국, 바베이도스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그레나 딘, 세인트키츠네비스, 아이티, 앤티가바부다, 자메이카, 캐나다, 트리니다드토바고
- 3) 유럽주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사이프러스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- 4) 중동·아프리카주: 가나, 가봉, 남수단, 남아프리카공화국, 리비아, 모로코,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세이셸, 아랍에미리트, 앙골라, 에티오피아, 오만, 우간다, 이스라엘, 이집트, 적도기니, 카타르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다. 다등급

- 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뉴질랜드, 니우에, 마셜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인도네시아, 중국, 키르키즈공화국, 타이, 터키, 투르크메니스탄, 파키스탄, 피지
- 2) 남·북아메리카주: 가이아나, 과테말라, 도미니카공화국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에콰도르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파나마
- 3) 유럽주 :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리투아니아, 몬테네그로, 불가리아, 세르비아, 슬로바 키아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우크라이나, 체코, 크로아티아, 폴란드
- 4) 중동·아프리카주: 기니, 나이지리아,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레바논, 르완다, 말리, 모리셔스, 모잠비크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상투메프린시페, 세네갈, 수단, 스와질 란드, 시에라리온, 아프가니스탄, 알제리, 요르단, 이라크, 잠비아, 중앙아프리카공화 국, 카메룬, 케냐, 탄자니아

라. 라등급

- 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네팔, 동티모르, 라오스, 몽골, 미얀마, 미크로네시아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 타지키스탄, 통가, 필리핀
- 2) 남·북아메리카주: 니카라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- 3) 유럽주: 마케도니아, 몰도바, 벨라루스,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, 알바니아
- 4) 중동·아프리카주 : 감비아, 기니비사우, 나미비아, 레소토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모리타니, 소말리아, 예멘, 이란, 짐바브웨, 튀니지

- 2.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
- 3.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(이하 "할인정액"이라 한다)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때에는 숙박비 실비상한액의 8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는 제7조제2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 <신설 2017.10.18.>
- 4. 국외 철도 및 선박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. <신설 2021.1.6> 가. 철도 및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: 최상 등급의 철도·선박 운임
 - 나. 철도 및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: 그 승차 · 승선에 필요한 실비
 - 다.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(선박운임 제외)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: 그 실비

■ 여비규정 [별표5] 삭제 <2015.9.1.>

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 (제13조 제4호 관련)

| | 지 급 사 유 | 지 급 액 |
|----|---|--|
| 1. |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| 가.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 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·선박운임·항공운임· |
| 2. | 외국 근무 중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 으로 귀국시킬 때 | 자동차운임 및 비자발급 등에 소 요되는 비용 전액과 일비·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 |
| 3. |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소속장의 명에 따라 본국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하여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때. 다만, 4년마다 한 차례로 한정한다 | 나.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 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·선박운임·항공운임· 자동차운임 및 비자발급 등에 소 요되는 비용 전액 전액과 일비· 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 |
| 4. |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 등 소속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(1회 한정) | 하는 금액 |
| 5. | 외국 근무 중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·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할 때 | |

※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 1개월 범위에서 제13조에 따른 가족여비(운임은 소속장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만 해당한다)를 지급한다.

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 (제24조 관련)

| 해당자 | 지급 기준 |
|--|--|
| 1. 임직원의 배우자 | - 배우자인 임직원의 여비 지급등급 |
| 2. 공무원 | -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|
| 3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· 직원 | - 공단의 직위체계와 비교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 |
| 4. 그 밖에 임직원이 아닌 사람 | - 외부인사 출장 여비는 강사료 등 제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. |

■ 여비규정 [별지 제1호서식]

개산급여비 정산서 (제7조제2항 관련)

| 예~ | 산과 | ·목 | | | | | | | 관 | <u>ł</u> | | | | | 항 | | | | | | 목 | | | | |
|----|----|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--|----|---|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개 | 산금 | ·액 | 일금 | | | | 원 | 정 | | | | | 일급 | -1 . | | | | | | Ó | 1 74 | (ネコ | , 반납 | , | |
| 정 | 산금 | ·액 | 일금 | | | | 원 | 정 | | | | |] 현1 | 口 | | | | | | ₹ | l 정 | (추가 | , Ui |) | |
| | 출 | · 장 | 자 | | 개산금 | | | | | | | 정 | | 산 | | 명 | 세 | | | | | 정산 | ·결과 | | |
| 소 | 직 | 성 | 청 구 | 월 | 지급 | 개 | 월 | 출 | 도 | 체 | O T | 일 임 | 일 | ! 당 | 소 | 박료 | 식 | 비 | | | | | | 여행사유 및 | ì |
| 속 | 급 | 명 | 반납엔 | 일 | 지 급 요구서 번 호 | 개 산 금 액 | 일 | 출 발 지 | 도 착 지 | 제지 | 일수 | 금액 | 일 수 | 금액 | 일 수 | 금액 | 일 - | 구액 | | | 합계액 | 추급액 | 반납액 | 비 3 | 辽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ブ |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우 | 의 영 | (반납) | 함. | | • | • | | | • | | | - 1 | | ٥١ | | | , | • | | | | | | _ |
| | | | | | | | | 귀ㅎ | }- | | | | 년 | | 월 | Ó | <u> </u> | | | | | | | | |

가족여비 및 가재이전비 청구서 (제15조 관련)

| 청 구 인 | 소 | - 속 | | | | 직 급 | | | 성 명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인사발령 | 빌 | 령일자 | | | | 부임일자 | | | 구임지 | |
| | | 가족성 | 명 | 관 계 | | 연령(만) | 청구금액 | | 청구의 | 산출 |
| | | | | | | | | | | |
| 가족여비 | | | | | | | | | | |
| (1)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
| 가재이전: | 1] | 구거주 (구임 <i>></i> | | | | 거리(km) | 이전일자 청 | | 구금액 | 비 고 |
| (2) | | | | | | | | | | |
| 합계 2 | 청구 | 금액 (1)+ | (2) | | | | | | | |
| | | | 위와 | 같이 가족 | 여ㅂ | 비 및 가재이전 | <u></u> 비를 청구합니 | 니다.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청구인 : | | | (인) | |
| | | | | 위와 | 같 | 이 부양가족이 |] 이전하였음; | 을 확여 | 인함. | |
| 소속장 | | 소 소 | 3 | | | | | | | |
| 확 인 | | 소속장 | 직유 | 각 : | | | | | | |
| | | 소속장 | 성명 | 녕 : | | (' | 인) | | | |

■ 여비규정 [별지 제3호서식] <신설 2017.10.18.>

국외 부임여비 신청서 (제12조제3항 관련)

| 청구인 | 소 | 속 | | | 직 | 급 | | | 성「 | 경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|
| 인사발령 | 발령 |]일자 | • | | 부임약 | 일자 | | | 발령구 | 국가 | |
| | ی | 통화단위 | 4 | 환율(1 | USD당] |) | 환율 | · 출치 | -1 | રે | 율적용 일자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청 | 구금액 | (1) | 일비 | | | 식비 | | 숙박비 | | 운임 |
| | USD | | | | | | | | | | |
| 청구내역 | ₩ | | | | | | | | | | |
| | - 청구액 산출내역 :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1 | 비자발 | 글비(2) | | ₩ | | | | | | |
| 합계 | · 청구· | 금액 (1 |)+(2) | | ₩ | | | | | | |
| | 제 | 12조 3 | 항에 띠 | 라라 증거자 | 료를 첨 | 부하 | 여 국외 부 | 임여 | 비를 청 | 구합니 | 니다.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
| 첨 부 : 증빙서류 1부.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년 | 월 | 일 | | | | |
| | | | | | 청 | 구 약 | 빈 성명 | | | | (인) |

※ 증빙으로 인정되는 범위 : 신용카드 매출전표, 공단명의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기타 이에 준하는 영수증